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자체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 및  
내용정보의 2일 이내 통보 의무 부과 등 〉

■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944호)

2026. 3.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자체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 및 내용정보의 2일 이내<br>통보 의무 부과 등(안 제50조의4 및 제66조의2제2항) ..... | 2  |
| ※ [참고] 협회 및 민간업계 의견 .....                                                      | 10 |

##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승수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6. 2. 23.

다. 회 부 일 : 2026. 2. 24.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 및 내용정보와 등급분류를 하거나 할 예정인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비디오물의 제작·수정·유통 과정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체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관리·점검 또한 실시간에 가까운 대응이 요구됨에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통보시기가 지체될 경우 불법비디오물 등으로 인한 이용자 및 청소년의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 및 내용정보와 광고·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 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2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통보의무의 이행 시점을 명확히 하고 자체등급분류제도의 투명성과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4 및 제66조의2제2항).

### Ⅲ. 검토의견

#### 1. 자체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 및 내용정보의 2일 이내 통보 의무 부과 등(안 제50조의4 및 제66조의2제2항)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하여금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가 확인된 광고·선전물이 배포·게시되거나 시청에 제공되기 전에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 결과와 해당 광고·선전물의 세부사항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2일 이내 통보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서 자체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하여 등급과 내용정보 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2일 이내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p>법률 제2109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한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라 등급과 내용정보 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u>통보</u>할 것</p> <p>2의2. (생략)</p> | <p>법률 제2109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br/>-----.</p> <p>1. (현행과 같음)</p> <p>2. -----<br/>-----<br/>-----<br/>-----<u>2일 이내 통</u><br/><u>보</u>----</p> <p>2의2. (현행과 같음)</p> |

| 현행                                                                                                                                                             | 개정안                                                                                  |
|----------------------------------------------------------------------------------------------------------------------------------------------------------------|--------------------------------------------------------------------------------------|
| 2의3.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광고·선전물이 배포·게시되거나 시청에 제공되기 전에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 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u>통보</u> 할 것                                                                   | 2의3. -----<br>-----<br>-----<br>-----2일 이내 통보-----                                   |
| 3. ~ 5. (생략)                                                                                                                                                   | 3. ~ 5. (현행과 같음)                                                                     |
| 법률 제2109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6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광고·선전물 유해성 확인 등) ① (생략)                                                                               | 법률 제2109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6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광고·선전물 유해성 확인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가 확인된 광고·선전물이 배포·게시되거나 시청에 제공되기 전에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 결과와 해당 광고·선전물의 세부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u>통보</u> 하여야 한다. | ② -----<br>-----<br>-----<br>-----<br>-----<br>-----2일 이내 통보-----.                   |
| ③ · ④ (생략)                                                                                                                                                     | ③ · ④ (현행과 같음)                                                                       |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법”이라 함) 제50조의4<sup>1)</sup>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50조제5항에 따른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2. 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라 등급과 내용정보 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등급분류책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이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여야 하고(제1호), 자체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하여 등급과 내용정보 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제2호).

구체적인 통보 시기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인 「자체등급분류업무규정」<sup>2)</sup>에 명시되어 있는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

4. 자체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따를 것
5.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2) 「자체등급분류 업무규정」

**제14조(자체등급분류번호 및 세부사항 통보)**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부여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의 자체등급분류번호는 별표 2와 같이 구성한다.

② 시행규칙 제15조의3 제2항 제4호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세부사항의 범위, 통보방법 및 통보시기는 별표 3과 같다.

**[별표3] 통보해야 하는 세부사항의 범위, 통보방법 및 통보시기(제14조 제2항 관련)**

|      |                                                                                                                                                                                                                                                                                                                                                                                                                                                                                                                                                                                                                                                                                                                                                                                                                                                                                                                                                                                                                                              |
|------|----------------------------------------------------------------------------------------------------------------------------------------------------------------------------------------------------------------------------------------------------------------------------------------------------------------------------------------------------------------------------------------------------------------------------------------------------------------------------------------------------------------------------------------------------------------------------------------------------------------------------------------------------------------------------------------------------------------------------------------------------------------------------------------------------------------------------------------------------------------------------------------------------------------------------------------------------------------------------------------------------------------------------------------------|
| 세부사항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작품명 및 소작품명 : 작품제목을 말하며 시리즈인 경우 해당 회차의 소제목을 말한다.</li> <li>2. 원제명 : 제작국이 해외인 경우에 해당국의 언어로 표기된 제목을 말한다.</li> <li>3. 제작사(국적) : 작품을 제작한 제작사와 국가를 말한다.</li> <li>4. 영상물의 종류 : 드라마(극영화 형식을 말한다),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뮤직 비디오, 공연실험, 기타영상물 중에서 해당 사항을 말한다.</li> <li>5. 감독 : 작품의 연출자를 말한다.</li> <li>6. 주연 : 작품의 주연을 말하며 3인 이내로 한다.</li> <li>7. 시청제공시간 : 부가영상을 포함한 시간을 말하며 분단위로 한다.</li> <li>8. 작품줄거리 : 작품 내용의 요약을 말한다.</li> <li>9. 제작연도 : 작품을 제작한 연도를 말한다.</li> <li>10. 서비스제공일자 :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작품을 시청에 제공된 날짜를 말한다.</li> <li>11. URL : 작품을 서비스하는 데 필요한 인터넷 자원의 주소를 말한다.</li> <li>12. 자체등급분류사업자 : 등급분류결정을 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말한다.</li> <li>13. 자체등급분류일자 :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를 한 날짜를 말한다.</li> <li>14. 자체등급분류번호 :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부여한 등급분류번호를 말한다.</li> <li>15. 등급 : 분류결정을 하고 온라인비디오물에 표시한 등급을 말한다.</li> <li>16. 내용정보표시항목 : 온라인비디오물에 표시한 3개 이내의 내용정보항목을 말한다.</li> <li>17. 내용정보 : 7개의 내용정보항목 중에서 등급분류결정에 고려된 항목의 정도를 말한다.</li> </ol> <p>※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라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정당한 권리자, 계약연도)을 아래 통보방법에 따라 함께 통보 가능</p> |
| 통보방법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비디오물의 세부사항을 입력하는 방법</li> <li>2. 온라인비디오물의 세부사항을 위원회의 정보처리시스템과 호환가능한 엑셀 등의 스프레드시트 형식의 파일에 담아 이를 위원회에 전송하는 방법</li> </ol>                                                                                                                                                                                                                                                                                                                                                                                                                                                                                                                                                                                                                                                                                                                                                                                                                                                        |
| 통보시기 | 서비스를 제공한 날짜로부터 5영업일 이내                                                                                                                                                                                                                                                                                                                                                                                                                                                                                                                                                                                                                                                                                                                                                                                                                                                                                                                                                                                                                       |

한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하여 등급과 내용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서비스를 제공한 날짜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함.

한편,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선전물’의 경우에도 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 절차가 지연되어 해당 온라인비디오물의 신속한 유통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sup>3)</sup>,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sup>4)</sup> 이 경우 그 확인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698호,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일부 발췌)**

그러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었더라도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이를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데,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선전물의 유해성 확인 절차가 지연되어 온라인비디오물이 원활하게 유통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4) 현행법 제66조에 따르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려는 그 광고·선전물에 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6호)**

**제66조(광고·선전의 제한 등)** ① 비디오물(제5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비디오물은 제외한다)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선전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나 선전물은 이를 배포·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나 선전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을 제외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그 광고선전물의 내용이 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의 내용 또는 등급과 다른 내용이나 등급을 표시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자는 그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게시물이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밖에서 보이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유해성 여부의 확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sup>5)</sup>이 의결되어 해당 법률이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6년 5월 12일 시행 예정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93호, 이하 “시행예정법률”이라 함) 제66조에 따르면,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가 아닌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나,

전술한 바와 같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시행예정법률 제66조의<sup>2)</sup>에 따라 자체등급분류하거나 자체등급분류할 예정인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선전물’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

---

5)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의안번호 제2213235호

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93호, 2026.5.12. 시행)

**제66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광고·선전물 유해성 확인 등)**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하거나 할 예정인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선전물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가 확인된 광고·선전물이 배포·게시되거나 시청에 제공되기 전에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 결과와 해당 광고·선전물의 세부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6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의 대상이 되는 광고·선전물의 내용이 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해당 광고·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 확인의 효력은 제2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한 후에 발생한다.

부를 확인할 수 있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가 확인된 광고·선전물이 배포·게시되거나 시청에 제공되기 전에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 결과와 해당 광고·선전물의 세부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또한, 시행예정법률 제50조의4<sup>7)</sup>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서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광고·선전물이 배포·게시되거나 시청에 제공되기 전에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 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현행법과 시행예정법률의 비교

| 구 분                                    | 현 행 법              | 시행예정법률  | 기 한                      |
|----------------------------------------|--------------------|---------|--------------------------|
|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분류                          | 자체 등급분류            | 자체 등급분류 | 서비스<br>제공일로부터<br>5영업일 이내 |
|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br>광고·선전물의 청소년<br>유해 여부 확인 | 영상물등급위원회<br>로부터 확인 | 자체 확인   | 배포·게시되거나<br>시청에 제공되기 전   |

-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93호, 2026.5.12. 시행)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50조제5항에 따른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2. 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라 등급과 내용정보 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 2의2. 제66조제6항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것
  - 2의3.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광고·선전물이 배포·게시되거나 시청에 제공되기 전에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 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등급분류책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4. 자체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따를 것
  5.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그런데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온라인비디오물의 제작·수정·유통 과정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체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관리·점검 또한 실시간에 가까운 대응이 요구됨에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통보 시기가 지체될 경우 불법 온라인비디오물 등으로 인한 이용자 및 청소년의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하여금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가 확인된 광고·선전물이 배포·게시되거나 시청에 제공되기 전에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 결과와 해당 광고·선전물의 세부사항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2일 이내 통보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서 자체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하여 내용정보 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2일 이내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정보 등이 신속하게 공유되어 부적절한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투명한 온라인비디오물 유통 질서가 확립되고 이용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① 자체등급 분류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 및 내용정보에 대한 결과 통보 시점을 ‘2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통보 지연으로 인한 부적정 등급 콘텐츠의 노출 가능성을 줄이고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나, ② 시행예정법률이 온라인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결과를 ‘배포·게시 또는 시청 제공 전’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 이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sup>8)</sup>, 별도의 통보시한을 추가로 설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현행 유지가 합리적이라는 의견임.

아울러, 주식회사티빙, 콘텐츠웨이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과도한 입법화에 따른 유연성이 저하되고, 사업자에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주며, 입법 실익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출함.<sup>9)</sup>

문 의 처

02)6788-5379

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93호, 2026.5.12. 시행)

제66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광고·선전물 유해성 확인 등)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하거나 할 예정인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선전물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가 확인된 광고·선전물이 배포·게시되거나 시청에 제공되기 전에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 결과와 해당 광고·선전물의 세부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6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의 대상이 되는 광고·선전물의 내용이 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해당 광고·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 확인의 효력은 제2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한 후에 발생한다.

9) 자세한 내용은 [참고] “협회 및 민간업계 의견” 참조

## 참 고

## 협회 및 민간업계 의견

| 업체명           | 의견 주요내용                                                                                                                                                                                                                                                                                                                                                                                                                                                                                                                                                                                                                                                                                                                                            |
|---------------|----------------------------------------------------------------------------------------------------------------------------------------------------------------------------------------------------------------------------------------------------------------------------------------------------------------------------------------------------------------------------------------------------------------------------------------------------------------------------------------------------------------------------------------------------------------------------------------------------------------------------------------------------------------------------------------------------------------------------------------------------|
| 주식회사<br>티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과도한 입법화에 따른 유연성 저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보 기한은 기술적 환경이나 시스템 안정성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이를 시행령이나 규칙이 아닌 법률 본칙에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li> </ul> </li> <li>■ <b>사업자 부담 과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등위의 수용 능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에게만 통보 기한 단축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li> </ul> </li> <li>■ <b>광고·선전물 통보 규정 관련 실무 충돌 가능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고·선전물 유해성 확인 결과를 '배포·게시 또는 시청 제공 전' + '2일 이내 통보로 규정할 경우 실시간 광고 집행과 충돌할 수 있으며, 온라인비디오물 보다 물량이 많아 추가적인 부담 발생</li> </ul> </li> </ul>                                                                                                                                    |
| 콘텐츠웨이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영등위 규정 사항의 과도한 입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을 통해 정하고 있는 등급분류 결과통보 시기(5 영업일 이내)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면서 통보 시기를 단축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일 수 있으며, 위임입법 범위를 벗어나는지 검토 필요</li> </ul> </li> <li>■ <b>입법 실효성(규제 실익) 부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통보 지연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며, 자사 기준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제공 당일 영등위에 통보가 이루어지고 있어 규제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li> </ul> </li> </ul>                                                                                                                                                                                                                                                                                   |
| 한국인터넷<br>기업협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과도한 입법규제 및 유연성 저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비디오물 등급 및 내용정보 통보 범위·시기는 영등위 「자체등급분류 업무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개정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li> <li>- 보 기한을 법률로 일률 규정할 경우 기술적 환경이나 시스템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어려워질 우려</li> </ul> </li> <li>■ <b>타 법령 대비 과도한 규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통보기한은 5영업일로 규정되어 있어 영상물에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할 합리적 근거가 부족</li> <li>- 개인정보 유출 신고기한이 72시간 이내임을 고려할 때 온라인비디오물 통보 기한을 2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li> </ul> </li> <li>■ <b>과도한 행정적 부담 발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등위가 실시간에 가까운 관리체계를 운영하려면 사후관리위원회 회의가 빈번하게 개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 부담 우려 제기</li> <li>- 이 경우 충분한 심의 없이 서면회의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어 제도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의견</li> </ul> </li> </ul> |